

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(제5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처분의 기가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처분기준의 1차 위반, 2차 위반,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.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(다만,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, 3차,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).
- 다.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- 4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5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한 경우
 - 6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7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령	처 분 기 준			
		1차	2차	3차	4차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9조 제1항제1호				
1)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		시정명령	시정명령	사업장 폐쇄명령	
2) 농어촌민박사업		시정명령	시정명령	사업장 폐쇄명령	

나.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	법 제89조 제1항제2호	사업정지 5일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
다.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89조 제1항제3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월	사업장 폐쇄명령
라.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	법 제89조 제1항제4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월	승인취소
마.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·양수한 경우	법 제89조 제1항제5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월	사업장 폐쇄명령	
바.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)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2) 농어촌민박사업	법 제89조 제1항제6호	시정명령 시정명령	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1월	사업장 폐쇄명령 사업장 폐쇄명령
사.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	법 제89조 제1항제7호	사업장 폐쇄명령			
아. 농어촌민박사업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	법 제89조 제1항제9호	사업장 폐쇄명령			